



#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





## 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?

**아닙니다.**

국공립어린이집,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,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대상(공무수행사인)입니다.





누리과정을 운영하는  
어린이집 보육교사도  
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?

**아닙니다.**

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,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



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 
축하 케익을 줘도 되나요?

**예. 됩니다.**

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 
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에게 생일 축하 케익을 줘도 됩니다.





학부모는 자녀의 생일에 같은 반  
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 
케익을 보내도 되나요?

**예. 됩니다.**

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 
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됩니다.





어린이집 수료 후 유치원에 입학한  
아이의 학부모는 과거 어린이집  
원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?

**예. 됩니다.**

유치원으로 진학한 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.





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현장학습,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나요?

**예. 가능합니다.**

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단체 인솔 보육교사가 받는 무료 입장 혜택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




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 
소속 보육교사로부터 음식물이나  
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?

**예. 가능합니다.**

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보육교사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, 5만원 이하 선물 (농수산물·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이하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